

'한 표의 소중함' 10개월간 이어진 당선과 낙선. 그리고 당선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반발하는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지난해 6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반발하는 모습.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의 한 표, 역사를 바꿉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거 때만 되면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해가 지나면서 문구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한 표’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선거 후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카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에서는 ‘한 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각 1천 399표를 얻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의 실명은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A씨, 무소속 후보를 B씨로 칭하겠다.)

표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살 많은 A씨가 당선되

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된 재검표 결과 청양선관위가 A씨의 한 표를 무효로 처리하면서 B씨가 당선됐다.

한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A씨는 청양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급기관인 충남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충남선관위는 무효로 결정한 한 표를 A씨의 득표로 인정했다. A씨가 한 표를 추가로 얻음에 따라 두 후보는 다시 동률이 됐고,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자는 또다시 바뀌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B씨가 법원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선관위가 결정한 당선 무효를 다시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다.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유효인지는 물론 선관위의 유·무효 판단 기준도 궁금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소중한 취재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다행히 특별한

취재 일정이 없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상과 달리 양측 변호인은 다양한 팩트를 쏟아냈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 투표지뿐만 아니라 유효로 인정됐음에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투표지까지 양측은 여러 장의 투표지를 놓고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논란이 된 투표지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와,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표기돼 있지만 사람인(人) 표기가 아닌 투표지였다.

유·무효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방청객들도 ‘저게 왜 무효지?’ 혹은 ‘저건 무효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다. 누가 최종 당선자가 되느냐와 함께 선관위의 유·무효 해석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기자는 속으로 꽤 재를 불렀다. 본인을 제외하고는 취재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기사를 작성하려 하자 한 가지 우려가 들었다. 양측 변호인의 공방 과정을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였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기사가 나감에 따라 자

칫 ‘여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다소 건방진 걱정을 한 것이다.

여기에 기자가 유효라고 생각한 투표지를 법원이 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기사는 작성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송고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법원은 문제의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현장검증까지 했다. 기사를 송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단독 욕심에 ‘기레기’가 될 수는 없었다.

드디어 변론 마지막 날. 양측 변호인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토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지의 유·무효를 주장했다.

기자는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마자 오랫동안 참고 있던 기사를 송고했다. 재판부의 유·무효 판단과 별도로 독자들도 개인적으로 유무효를 판단해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 투표용지에 제대로 기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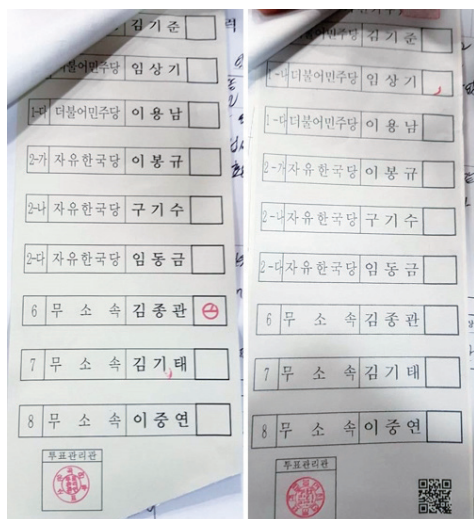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다. 기사가 출고되자마자 동료 기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고, 온라인상에서도 유·무효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월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B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무효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거인의 의사'를 꼽았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 등 일부 훼손이 있더라도 유효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투표지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운명을 가른 투표지
대전고법은 지난 1월 16일 왼쪽 투표지는 김종관 유효(선관위는 무효), 오른쪽 투표지는 무효(선관위는 임상기 유효)라고 결정했다.



확인할 수 있어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결과 B씨는 당초 얻은 1천398표보다 1표 많은 1천399표를 얻었고 A씨는 1표 줄어든 1천397표가 됐다. 대전고법의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B씨가 지방선거 당선자로 최종 확정됐다. 투표부터 당선자 확정까지 10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의 관심을 받는 선거도 아니고,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시장·군수를 뽑는 선거도 아니었다. 인구 3만여 명에 불과하고 충남에서도 가장 작은 기초지자체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당선과 낙선이 반복된 이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어떤 선거보다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 표의 소중함'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말로만 소중한 한 표가 아니라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유권자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투표과정의 신중함도 지적했다. 양측이 유효와 무효를 놓고 공방을 벌인 투표지들은



기자회견하는 김종관 청양군의원
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당선자가 된 김종관 청양군의원 이 지난 4월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유권자의 실수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기표 과정에서 조금만 신중을 기했다면 나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관위에게 이번 사건은 투표지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유효로 판단한 투표지가 무효가 됐고, 무효라고 선언한 투표지가 유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취재 현장을 뛰는 기자에게 이번 사건은 한물간 사건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새로운 팩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언론계의 유명한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도 남겨졌다. 소송에서 선관위가 패소함에 따라 선관위가 소송비용을 책임져야 하지만,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양군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청양군으로서는 소송비용이라는 짐까지 짊어지게 된 셈이다. 소송비용의 청양군 책임을 놓고 일각에서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많은 과제와 메시지를 남긴 청양군 의원 선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